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지방의회 중계방송에 대한 장애인방송 적용 등〉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78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원의원 등 23인
2. 발의연월일 : 2025. 2. 3.
3. 회부연월일 : 2025. 2. 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 회의에 관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회의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청사 내부방송이나 인터넷 중계 형식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방송에서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시각·청각 장애인의 접근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이에 본회의 및 위원회의 중계방송 근거 규정을 둔과 함께,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어수어, 폐쇄자막 등을 제공토록 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이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국회법」 제149조(국회에 의한 방송) ① 국회는 방송채널을 확보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 그 밖에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등을 음성이나 영상으로 방송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정치적·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국회는 제1항의 방송 제도를 운용하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회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방송에 관한 기본원칙의 수립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제1항의 방송에 관한 절차·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9조의2(중계방송의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	제75조의2(중계방송 허용 등)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회의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으로 한정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국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하는 사람은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혀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회의장 내에서의 중계방송 허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 규정¹⁾ 이외에 중계방송 등과 관련된 장애인 편의 제공방안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반면, 「국회법」은 의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23일부터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국회가 방송제도를 운용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에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1) 「지방자치법」

제7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 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참고로, 국회방송(NATV)의 경우 방송용채널사용사업자에 해당하나, 자체적으로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로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중계방송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³⁾, 「방송법」⁴⁾ 등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및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의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함) 제공을 의무화⁵⁾하고 있음.

를 고려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하여야 함. 이를 위하여 2024년도 예산에서 ‘국회방송의 장애인 시청지원’사업에 1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음.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율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4)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방송 편성의 무 대상사업자**는 “필수지정사업자”와 “고지의무사업자”로 구분되는데, 지상파, 종편과 같은 “필수지정사업자”는 총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5%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하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콘텐츠사업자와 같은 “고지의무사업자”는 총 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70%, 화면해설방송 5%, 한국수어방송 3%에 해당하는 장애인방송물을 제작·편성해야 함.

<장애인방송 개요>

□ 장애인방송의 개념 및 종류

- (개념) 시각·청각장애인의 방송시청을 도울 수 있는 방송
- (종류) ① 폐쇄자막방송, ② 화면해설방송, ③ 한국수어방송



□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사업자 및 의무편성비율

		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필수지정 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100%	10%	7%
	위성방송사업자	70%	7%	4%
고시의무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70%	7%	4%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콘 텐츠사업자	70%	5%	3%

※자료: 시청자권익정보센터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위원장이 지방의회의 회의에 대한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회의규칙⁶⁾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방

6) 「지방자치법」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송을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광역의회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회의 의사중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226개의 기초의회의 경우 92개만이 모든 회의에 대한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을 공개하고 있음.

<기초의회 의사중계 현황>

(단위: 개)

	모든 회의	본회의·상임위	본회의·특위	본회의	합계
실시간중계	7	1	–	2	10
영상회의록	16	4	2	25	47
실시간중계 및 영상회의록	92	10	1	37	140
합계	115	15	3	64	197*

*29개의 기초의회는 실시간중계 및 영상회의록 모두 미실시하고 있음

※ 자료: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국민권익위, 2024.

다만, 개정안 제75조의2제2항은 지방의회가 ‘제1항에 따라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항은 ‘지방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의 방송사 등에 대한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 허용’에 관한 규정⁷⁾이므로,

7)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에서 규정된 「국회법」 제149조는 국회가 직접 방송채널(국회방송,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같이 지방의회가 제공하는 중계방송에 대해 장애인방송의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직접 중계방송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중계방송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지방의회가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장애인방송 관련 지방의회 회의규칙 규정>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2(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이외에는 회의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 방송해야 한다.**

제55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 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를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자치단체장의 의회연설, 예산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도정연설, 공청회, 청문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중요안건의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의 예산안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본회의장 중계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NATV)을 운영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중계방송(인터넷의사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방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9조의2에 따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방송 허용에 관한 규정에서는 장애인방송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11조의3(장애인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국회가 확보한 방송채널’은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방송법」 제69조제9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장애인방송 의무 편성비용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에 준하는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광고 등 프로그램 사이에 방송되는 영상물은 편성비용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는 경우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중 어느 하나를 관련 기술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현행법을 보완하여 지방의회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참정권과 알권리를 강화한다는 점,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지방의회가 장애인 편의제공 범위·수단 등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여건에 따른 자율적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